

동작구의회공고 제2023-95호

「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」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23년 11월 8일  
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

###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## 1. 제안이유

동작구가 설치·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전년도 위원회 운영 및 정비실적과 정비계획을 점검하고 위원회 활동사항을 공개하도록 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도모하고자 함.

#### 2. 주요내용

전년도 위원회 운영 및 정비실적과 금년도 정비계획을 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규정함(안 제21조)

#### 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 [주소 :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(노량진동47-2)]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(전화 : 820-1715, FAX : 820-1474, E-mail : kyh06800@dongjak.go.kr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
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를 제22조로 하고,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1조(위원회 운영 공개 및 보고 등) 구청장은 전년도 위원회 운영 및 정비실적  
과 제19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정비계획을 매년 3월 말까지 서울특별시 동작구  
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<br>행                    | 개<br>정<br>안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| <p><u>제21조(위원회 운영 공개 및 보고 등)</u><br/> <u>구청장은 전년도 위원회 운영 및 정</u><br/> <u>비실적과 제19조제2항에 따른 위원</u><br/> <u>회 정비계획을 매년 3월 말까지 서</u><br/> <u>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소관 상임위원</u><br/> <u>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</u><br/> <u>에 공개하여야 한다.</u></p> |
| <p><u>제21조 (생 략)</u></p>  | <p><u>제22조 (현행 제21조와 같음)</u></p>   |

# 【 관 계 법 령 】

## ▶ 지방자치법

- 제130조(자문기관의 설치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(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,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, 위원회 등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- 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·절차,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다만,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·절차,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·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·운영해서는 아니 되며,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.
-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